

#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 상정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4415호, 1991. 12. 14)으로 불일치한 내용  
수정

○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배제

○ 세목의 신설 및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 징수 규정 마련

나. 주요골자

○ 지역개발세 신설 및 현행 시·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  
됨에 따른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

○ 법령에서 위임한 세율의 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민귀식)

- 1991년 12월 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되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둘째, 조례에서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중복이 되는 조항은 삭제  
셋째, 새로이 신설되는 지역개발세와 시·군의 목적세에서 도의 목적세로 변경되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 금번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공평·합리세정의 기반위에서 지방자주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세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 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